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카드뉴스 전파 협조 요청(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

1.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 「고등교육법」의 시행일인 2019. 8.1.부터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게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귀 부에서는 각급 대학교에 전파하시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카드뉴스(0730). 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감사총괄담당관)

서기관 청탁금지제도 전결 2019. 7. 30.
과장

협조자

시행 청탁금지제도과-2650 접수 감사총괄담당관-3823 (2019. 7. 30.)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704 팩스번호 044-200-7944 / codexpjg@korea.kr / 대국민 공개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